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4514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45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51699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원

피고, 항소심당사자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고, 항소인3.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보상

변론 종결 2024. 12. 12.

판결 선고 2025. 2.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5169983 판결

주문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36,741원 및 그 중 49,689,771원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54,136,741원 및 그 중 49,689,771원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6행 "제출되지 않은 점" 다음에 ", ⑧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면책사유가

있는지는 면책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형작

판사김연화

판사해덕진